

## 요 약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보험 관련 특례가 인정된 서비스는 27건임. 주요 사례로는, 여행·레저보험의 간편가입 서비스, AI를 활용한 TM 모집 서비스,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서비스 등이 있음.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2019년 4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현재까지<sup>1)</sup> 보험과 관련하여 총 2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음
  -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등 금융 관련 법령상의 규제에 대해 특례가 인정됨(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17조)
  -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이후 2021년 11월까지 총 18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보험법 및 하위 규정과 관련하여 특례가 인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7건임
    - 보험 간편가입, AI를 활용한 TM 모집, 모바일 쿠폰을 통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보험계약자의 노력에 따른 리워드 지급 등이 있으며, 이하에서 보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함
- 해외여행자보험, 레저보험, 기업성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에서, 최초 가입 시 포괄가입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내에 재가입 시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나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App 클릭 등만으로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인정됨(이른바 ‘On-Off 보험’ 또는 ‘스위치 보험’)
    - 보험업법상<sup>2)</sup> 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지며, 사이버몰을 이용한 보험모집 시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내용에 대해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함
    - 해외여행자보험과 관련하여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재가입 시 설명의무 및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간소화함으로써 App상 본인확인만으로 보험 가입이 완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다만 재가입 시 직전 체결 보험과 동일 담

1) 2021. 11. 12.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기준임

2) 본고에서 보험업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에 따름

보 및 보장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레저보험 관련하여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재가입 시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간소화하여 App상 본인확인만으로 보험가입이 완료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sup>3)</sup> 특례 대상 보험종목을 여행·레저와 관련된 보험<sup>4)</sup>으로 한정하고, 보험기간 및 보험료를 최대 30일 및 최대 10만 원(해외여행자보험은 90일 및 30만 원)으로 제한함
- 최초 가입 시에는 설명의무와 청약의사 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재가입 시 절차가 생략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소액 기업성보험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인정됨
  -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에 법인의 보험가입 시에는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 없이 직원의 온라인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특례 대상 보험상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험 가입 업무 간소화 필요성이 큰 보험<sup>5)</sup>으로 한정하며, 연간 보험료 제한<sup>6)</sup>도 설정함

#### ○ 보험모집 과정에서 AI나 모바일기기를 활용하는 서비스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 전 과정을 AI를 통해 진행하는 보험가입 서비스가 인정됨
  - 보험업법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보험설계사의 범주에 AI를 포함시켜서 AI가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임
  - AI를 통한 모집 건수를 연간 1만 건으로 한정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 전건에 대해 통화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련 민원·분쟁·소송 등에 대한 책임은 제휴 보험회사에서 처리함을 조건으로 함
- 은행의 모바일 App상 AI 비서를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가 인정됨
  - 소비자가 은행의 모바일 App상 AI 비서를 통해 방문을 예약하고 실제로 영업점에 도착하면 App을 통해 해당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sup>7)</sup> 보험상품, 예·적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임
  - 보험업법에서는 은행의 보험모집 방법을 제한하고 있는데(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대면 모집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집), 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것임
  - 모바일 App을 통한 보험상품 광고는 소비자가 방문 예정인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모집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고 소비자가 영업점에 도착했을 때부터만 허용하며, 모바일 App을 통한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광고가 가능함
- TM 모집 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도 인정됨
  -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상 TM 모집 시 모집인은 모집의 전 과정을 음성녹음해야 하고, 보험청약내용·고지의무·보

3) 보험계약 반복 체결 시마다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등에 대해 App상 알림창 등을 통해 피보험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4) 상해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비용보험(파손·분실사고·출입원), 도난보험

5) 가스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다중이용업소), 학원및교습소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풍수해보험 등으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지정 건별로 조금씩 상이함

6) 예를 들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최대 5만 원, 풍수해보험 최대 10만 원,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최대 30만 원임

7) 예약한 소비자의 성향 파악 및 소비·투자 패턴 분석을 통해 개인 맞춤형 상품 정보를 제공함

협약관의 주요 내용 등을 질문·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고 해당 녹음 내용을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자필서명 의무가 면제되며, 음성녹음에 의해 청약이 완료됨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서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음성녹음 없이 모바일 기기로 진행(App 화면 상 표준상품설명대본 내용 제시, 일부 음성 설명 제공 병행<sup>8)</sup>)할 수 있도록 하여, 위 규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함
- 대상 보험상품은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 원 이하 가입 건으로 한정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모집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모집인의 유선 설명을 원하는 경우 즉시 기존의 TM 가입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함

#### ○ 모바일 쿠폰을 활용한 보험료 납부, 포인트를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됨

-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쿠폰을 할인 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해당 쿠폰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인정됨
  -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모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행위가 보험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특례를 인정함
  - 또한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를 수납하여야 하나, 모바일 쿠폰으로 보험가입 시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기간 개시 후에 보험료를 정산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함
  - 해당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모바일 쿠폰 허용 및 보험료 할인 등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대상 보험상품(예: 소액보험, 생활밀착형 보험), 하나의 보험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 금액의 합계(최대 2만원), 모바일 쿠폰 구매 시 할인율(최대 10%) 등에 대해 제한한 경우도 있음
-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저축성보험의 중도·만기보험금을 포인트로 지급하여 소비자가 포인트 플랫폼<sup>9)</sup>에서 물품·서비스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인정됨
  - 포인트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의 정의에 따른 ‘금전 및 그 밖의 급여’에 해당해야 하고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에 포함되어야 해당 보험이 저축성보험<sup>10)</sup>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제한된 점 등을 감안하면 포인트를 보험금 지급 형태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특례를 부여한 것임<sup>11)</sup>

####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중에는 소비자의 건강증진 노력 등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내용도 있음

---

8)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담당 모집인이 음성통화를 연결하여 직접 문의사항에 답변하고 가입 절차를 진행함. 이 경우에는 원래대로 음성녹음 의무가 적용됨

9) 포인트를 관리·정산하고 각종 물품·서비스 판매사와 제휴하여 금융소비자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 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임

10) 생존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해야 함

11)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에는 포인트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이하, ‘발행관리업’)을 부수업무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후 지정 내용 변경을 통해 경영·부수업무 신고 없이 발행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가 추가됨(2021. 7. 21)

- 소비자에 대한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에 대해 특례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음
  - 반려동물보험 소비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증진 목표를 달성한 경우,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반려동물 관련 제휴처(동물병원, 운동센터 등)에서 사용 가능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인정됨
  - 신청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운행정보 수집장치(D-Tag)를 장착하고 제휴 통신사의 T-Map을 이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운전기준<sup>12)</sup>을 충족하는 경우, 제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월 1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서비스가 인정됨<sup>13)</sup>
  - 소비자가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건강등급을 산정하고 일정기준 충족 시 기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인정됨<sup>14)</sup>
- 입원일당 보험에서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매 기말 보험료를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도 인정됨
  - 보험업감독규정상 무배당보험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고 유배당보험이익에 대한 주주 지분은 10% 이하로 하고 잔여부분은 계약자 지분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해당 서비스의 경우 보험가입자 집단의 보험사고 미발생에 따른 이익의 90% 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함으로써 사실상 위험률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무배당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셈이 되어 특례를 인정한 것임

○ 그 밖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내용, 재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는 내용도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상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단체 요건 불충족 시 기초서류 사전 신고가 필요한데,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상품(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함
- 신청인인 재보험회사가 건강증진서비스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해당 건강증진서비스가 탑재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보험회사(재보험계약자)에게 플랫폼 서비스<sup>15)</sup>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플랫폼 운영이 재보험업에 부수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특례를 부여함

○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아울러, 테스트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편익이 검증된 경우에는 실제로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작업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12) T-Map을 사용하여 월 200km 이상 주행, T-Map 주행거리가 D-Tag에 기록된 주행거리의 50% 이상, T-Map 안전운전점수(고려요소: 과속, 급가속, 급감속, 야간주행 등) 70점 이상, 무사고 등임

13) 신청인인 보험회사는 제휴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됨을 조건으로 함(정상적인 광고수수료나 정보이용료는 가능)

14) 헬스케어·금융솔루션 제공업체인 신청인이 보험계약자의 건강검진기록이나 병원이용기록 등을 이용하여 건강등급(1~9등급)을 산출하며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제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할인해 줌. 제휴 보험회사는 특약을 신설하여 건강등급의 정의 및 적용 방식, 건강등급에 따른 보험료 할인 조건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함을 조건으로 함

15) 보험회사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판매 시 해당 플랫폼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현물 또는 부가서비스로 제공 가능함

〈표 1〉 보험 분야 혁신금융지정서비스 지정 목록

번호	구분	신청과제명 <sup>16)</sup>	신청기업명	지정일	관련 규제 <sup>17)</sup>
1	해외여행자보험 간편가입	On-Off 해외여행자 보험	NH농협손해보험	19. 4. 17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2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레이니스트	19. 4. 17	
3	레저보험 간편가입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19. 11. 20	보험업법 제96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4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레이니스트	19. 11. 20	
5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플랜에셋	19. 11. 20	
6	기업성보험 간편가입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	19. 11. 6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7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현대해상	20. 3. 18	
8		기업성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KB손해보험	20. 5. 27	
9		기업성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	DB손해보험	20. 12. 22	
10	모집 방식 다양화	AI 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시스템	19. 5. 15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호
11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금융상품 예약·상담 서비스	NH농협은행	19. 12. 18	보험업법 제91조 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2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	21. 7. 21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8항, 제4-36조의2 제4호, 제4-37조 제2호 및 제3호
13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DB손해보험	21. 7. 21	
14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 보험상품 가입서비스	NH농협생명	21. 7. 21	
15	보험료 수납 방식 다양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CM보험 e-쿠폰	NH농협손해보험	19. 6. 26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
16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	현대해상	20. 4. 1	
17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하나생명	20. 12. 22	
18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교보생명	20. 12. 22	
19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쿠르파이맵스	20. 12. 22	
20	보험금 지급 방식 다양화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한화생명	20. 11. 18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가목,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 <sup>18)</sup>
21	리워드 혜택 제공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스몰티켓	19. 7. 24	보험업법 제98조
22		T-Map과 D-Tag을 이용한 안전운전 캠페인	캐롯손해보험	20. 11. 18	
23		건강점수 및 등급 산정을 통한 보험혜택 제공 플랫폼	그레이드헬스체인	20. 12. 22	
24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미래에셋생명	20. 2. 19	
25	부수업무 확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스쿠라인슈어런스 한국지점	20. 4. 1	보험업법 제11조의2
26	단체보험 확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삼성생명	20. 2. 19	보험업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
27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	교보생명	20. 12. 22	

1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의 서비스명을 따름

1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보험업법 및 하위 규정의 조항임

18) 2021. 7. 21. 보험업법 제11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6조 특례가 추가됨